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낙후지역 정의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포함 》

■ 이재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65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이재강의원 대표발의(제2212365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낙후지역 정의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포함 (안 제2조제5호)	2

I. 이재강의원 대표발의(제221236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재강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8. 26.

다. 회 부 일 : 2025. 8.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적용대상은 수도권 및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과 수도권 중 낙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낙후지역의 범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었다가 대한민국에 반환된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부지를 공여해온 결과 발전이 더디고 낙후된 곳들이 많아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경우에도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균형 발전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낙후지역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3. 검토의견

가. 낙후지역 정의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포함 (안 제2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낙후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향지역을 말한다. <신설> <신설> 6. 7. (생략)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향지역 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6. 7.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개정안은 지역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¹⁾인 낙후지역²⁾의 정의에

1)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3)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포함하려는 것임.

반환공여구역은 공여구역⁴⁾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3.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2)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낙후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0.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나.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제외한다.

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반환공여구역"이라 함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한다.

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역으로서, 반환공여구역 부지면적은 약 180km²에 이르며 그 중 대부분인 173km²의 반환공여구역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음.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현황】

구분	전체공여구역		반환대상 공여구역		반환대상 중 활용가능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반환완료	미반환
계	51	211km ²	34	173km ²	22	18	4
북부	38	168km ²	29	145km ²	20	16	4
남부	13	43km ²	5	28km ²	2	2	

※자료: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홈페이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반환공여구역 소재 및 인접 읍·면·동 지역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178개 행정구역이 지정⁵⁾되어 있음.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어 사용됨에 따라 개발되지 못하고 낙후된 경우가 많은 상황으로, 개정안과 같이 낙후지역의 정의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개별법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⁶⁾을

5)	구분	기초지방자치단체(30개)	행정구역(178개)
	합계	시(20개) · 군(7개) · 구(3개)	읍(20개) · 면(62개) · 동(96동)

수립하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규제특례 적용⁷⁾ 및 사업비 지원·조세 감면⁸⁾ 등이 가능한 상황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현행법 상 낙후지역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지역과 접경지역 또는 지리적 여건에 따라 개발이 제약되는 특수상황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대부분 수도권 및 광역시에 위치⁹⁾하고 있어 개발이 제약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한미군 공여

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근로자 및 사업자 전직·전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7.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0.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
11.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특례), 제19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8)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제34조의2(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현재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임.

특히, 다수의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생활여건이 성장촉진지역 대비 우수하고, 일부 저조한 지역은 성장촉진지역 또는 특수상황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으므로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낙후지역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74

9)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 중 낙후지역은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한다.